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35

발의연월일: 2024. 11. 13.

발 의 자 : 복기왕 · 정준호 · 박용갑

정성호 • 어기구 • 윤종오

채현일 • 안호영 • 부승찬

이연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며,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현행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10만 원으로 낮아 기부자들의 세액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기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간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율 구간이 없어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하고, 5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 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기부자에게 합리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8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만원"을 각각 "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만원"을 "5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만원"을 각각 "50만원"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50만원 × 110분의 100 + 450만원 × 100분의 20 + (고향사랑 기부금 - 500만원) × 100분의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세액공제 등)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 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 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 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 -----50만원----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 -----50만원-----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 1. 50만원-----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2. 50만원-----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5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50만원----100분의 20 15

<u><신 설></u>	3.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50만
	<u>원 × 110분의 100 + 450만원</u>
	× 100분의 20 + (고향사랑 기
	<u>부금 - 500만원) × 100분의</u>
	<u>15</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